

##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기술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 완화 (안 별표 18 IV제5호아목)

- (1) 현행 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위험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2) 공사장에 관련 된 덤프트럭 등에 한하여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함
- (3)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에 관련 된 자동차의 연료공급의 원활함을 추구함

나.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 (안 별표 19)

- (1) 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음

(2)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 20리터로 개정하고자 함

(3) 농·어촌 지역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의 관행에 따른 규제 저항을 해소하고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다.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함 (안 별표 25 제10호)

(1)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 교육중 강습교육에 관한 수수료를 규칙 별표 25 제10호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기준의 시의성(時宜性) 확보가 곤란함

(2) 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및 법무부와 합의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의견조회(2006. 2. 13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입법예고(200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나목 중 “소방서장 또는 공사”를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공사”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당해 신고서의 사본”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도지사의 처리결과 통보) 시·도지사가 영 제7조제1항의 설치·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제4호중 “재해의 방지”를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로 하고, 동조제6호 중 “위험물의 취급작업”을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의 보수작업 등 위험물 관련 작업”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단서, 동항제1호가목, 동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의 단서 및 동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술인력은 매주 3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한 감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단서,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 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을 각각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제3호중 “채우는”을 “옳게 답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일반취급소”로 한다.

별표 6 X라목1)중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을 “경우 또는 지정수량”으로 하고,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를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로 한다.

별표 10 X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3 I 제1호중 “채우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하고, 동별표 V 제1호가목중 “채우기”를 “옮겨 담기”로 한다.

별표 16 I 제2호마목중 “다시 채워 넣는”을 “옮겨 담는”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다시 채워 넣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한다.

별표 16 VI제5호중 “다시 채워 넣기”를 “옮겨 담기”로 한다.

별표 16 VII제1호중 “다시 채워 넣거나”를 “옮겨 담거나”로 한다.

별표 17 I 제5호사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 및 미국 NFPA Code 13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8 I 제1호를 중요기준으로 하고, 제2호 내지 제15호를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 18 III제4호 및 제17호를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 18 IV제2호를 세부기준으로 하고, 동호 각목 외의 부분중 “채워 넣는데”를 “옮겨 담는데”로 하고, 동호가목 및 나목중 “다시 채워 넣는”을 “옮겨 담는”으로 한다.

별표 18 IV제5호가목중 “· 철도주유취급소 및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를 “및 철도주유취급소”로 하고, 동호바목을 세부기준으로 하고, 동목1) 중 “또는 유황”을 “,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 4류 위험물”로 하고, 동호아목1) 단서중 “채우는”을 “주입하는”으로 하고, 동호아목4)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는 장

소에서 당해 공사에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8 V 제1호를 세부기준으로 하고, 동호 각목 외의 부분중 “다시 채워 넣을”을 “옮겨 담을”로, “다시 채워 넣는”을 “옮겨 담는”으로 한다.

별표 18 V 제2호중 “별표 19 II 제8호 각목”을 “별표 19 II 제8호”로 하고, 동호중 “별표 19 II 제8호 각목 및 별표 19 II 제13호 각목”을 “별표 19 II 제8호 및 별표 19 II 제13호”로 한다.

별표 18 부표 제2호 중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 제외)의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 반 용 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 장 용 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I	II	I	II	III	I	II	I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 제외)	10ℓ		-		-	-	
			20ℓ				○	○			
			30ℓ					-		-	

별표 19 I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 19 II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9 III 제5호중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응급조치”로



한다.

별표 19 부표 1 제2호 중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 제외)의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 반 용 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 장 용 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I	II	I	II	III	I	II	I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 제외)	10ℓ		-		-	-		-	
			20ℓ				ㄹ	ㄹ			
			30ℓ					-		-	

별표 21 제1호가목 단서중 “운반책임자의”를 “운송책임자의”로 한다.

별표 25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지 제18호서식 비고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경허가와 관련된 기술검토신청시에는 기타 필요한 사항란에 변경사항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처리기한 “3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6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4항중 “설치허가”를 “완공검사”로 하고, “허가번호”를 “완공번호”로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b>		처리기간 10 일
신청 기관	①명 칭	
	②소재지	③전 화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_____ (전화 _____) 성 명 _____ 서명(또는 인)</p>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기술인력의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장비보유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비고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란	※ 경 과 란	※ 수 수 료 란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지정연월일 지정번호	없 음





<b>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b>		처리기간 3일	
탱크 시험자	①명 칭		
	③소재지	②전화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등록 연월일 및 등록번호	년 월 일 제 호	
⑦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⑧변경 연월일	년 월 일		
<p>「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변경한 사항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 (전화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서명(또는 인)</p>			
첨 부 서 류	변경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영업소 소재지	1. 사무소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없 음
	기술능력	1. 변경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증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없 음
	대표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호 또는 명칭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비고</p> <p>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포함)을,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p> <p>2.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p>			
※ 접 수 란	※ 경 과 란	※ 수 수 료	
접수연월일 접수 번호	처리연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5 제7호에 의한 금액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탱크컨테이너의 표시 등) ①영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시”라 함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의한 최초의 시험 및 최근의 정기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압시험의 실시연월일</li> <li>2. 수압시험의 시험압력</li> <li>3. 수압시험의 입회자에 의한 증명</li> </ol>	<p>제17조(용접부의 기준) ① &lt;삭제&gt;</p>
<p>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li> <li>가. (생략)</li> <li>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li> </ol>	<p>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 ----- : -----</li> <li>가. (현행과 같음)</li> <li>나. ----- -----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공사----- -----</li> </ol>





<p>(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에 관한 사항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및 제18조제1항의 탱크안전성능 검사신청서(충수·수압검사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와 그 첨부서류는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li> <li>5. (생략)</li> <li>6. 그 밖에 위험물의 취급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li> </ol>	<p>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 ----- -----</li> <li>5. (현행과 같음)</li> <li>6. -----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의 보수작업 등 위험물 관련 작업의----- -----</li> </ol>
<p>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p>	<p>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p>





<p>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① ~ ② (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u>기술인력</u>은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법 제15조 및 이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u>한다</u>.</p>	<p>공무원은 <u>범인등기부등본을</u> 제출받는 것에 <u>같음</u>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확인</u>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 <u>기술인력</u>(이하 이항에서 “기술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원으로 지정된 자는 -----</p> <p>-----</p> <p>-----</p> <p>-----</p> <p>--- 하며, <u>기술인력</u>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u>기술인력</u>은 매주 3회(저장소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한 감</p>
--	--

<p>④ (생략)</p> <p>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p> <p>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u></li> <li>2.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li> <li>3.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li> <li>4.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공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자료</li> <li>5.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li> </ol>	<p><u>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p> <p>①----- ----- ----- ----- ----- ----- -----</p> <p>- <u>〈단서 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삭 제〉</u></li> <li>2. ----- -----</li> <li>3. -----</li> <li>4. ----- ----- -----</li> <li>5. -----</li> </ol>
---	--





<p><u>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u></p> <p>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u>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u></p> <p><u>&lt;신 설&gt;</u></p>	<p>4. ----- : 위 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등록증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기술자격증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같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 ----- ----- ----- -----.</p> <p>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 ----- ----- ----- -----</p>





<p>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내화구조로 된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3) (생략)  마.·바. (생략)</p>	<p>-----  -----  ----- 경우  또는 지정수량의 -----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  탱크의 -----  -----.</p> <p>2)·3) (현행과 같음)  마.·바. (현행과 같음)</p>
<p>[별표 10 X]</p> <p>1.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I 내지 VIII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목 내지 바목(모서리체결금속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 사목 및 아목(외면의 도장 및 문자의 색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가. ~ 아. (생략)</p>	<p>[별표 10 X]</p> <p>1. -----  -----  -----  -----  -----.</p> <p>&lt;단서 삭제&gt;</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p>물을 용기에 <u>채우거나</u> 이동저장 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 <u>옮겨 담거나</u> -----</p> <p>-----</p> <p>-----</p> <p>-----</p> <p>-----</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13 V]</p> <p>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 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 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 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p> <p>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u>채 우기</u> 위한 작업장</p> <p>나.~사. (생략)</p> <p>2.·3. (생략)</p>	<p>[별표 13 V]</p> <p>1. -----</p> <p>-----</p> <p>-----</p> <p>-----</p> <p>-----</p> <p>가. ----- <u>옮 겨 담기</u> -----</p> <p>나.~사.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p>[별표 16 I 제2호]</p> <p>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에 정하는 일반취급소에 대 하여는 각각 II 내지 X의 규정 에 의한 특례에 의할 수 있다.</p> <p>가.~라. (생략)</p> <p>마.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p>	<p>[별표 16 I 제2호]</p> <p>2. -----</p> <p>-----</p> <p>-----</p> <p>-----</p> <p>가.~라. (현행과 같음)</p> <p>마. -----</p>

















<p>1. (생략)</p> <p>2. 위험물의 취급중 용기에 <u>다시 채워 넣는데</u> 대한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u>중요기준</u>).</p> <p>가. 위험물을 용기에 <u>다시 채워 넣는</u> 경우에는 V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할 것</p> <p>나. 위험물을 <u>다시 채워 넣는</u>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p> <p>3. 4. (생략)</p> <p>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주유취급소(항공기주유취급소·선박주유취급소·철도주유취급소 및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p> <p>1) ~ 12) (생략)</p> <p>나. ~ 마. (생략)</p> <p>바. 판매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u>중요기준</u>)</p> <p>1)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p>	<p>1. (현행과 같음)</p> <p>2. ----- 옮겨 <u>담는데</u> ----- -----(<u>세부기준</u>).</p> <p>가. ----- 옮겨 <u>담는</u> ----- -----</p> <p>나. ----- 옮겨 <u>담는</u> ----- -----</p> <p>3. 4. (현행과 같음)</p> <p>5. ----- ----- -----.</p> <p>가. -----( ----- <u>및 철도주유취급소</u>-----)에서의 취급기준</p> <p>1) ~ 12) (현행과 같음)</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바. ----- <u>(세부기준)</u></p> <p>1) ----- ----- -----</p>
---	--



<p>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p> <p><u>&lt;단서 신설&gt;</u></p> <p>5) ~ 9) (생략)</p> <p>자. (생략)</p> <p>6. (생략)</p> <p>[별표 18 V]</p> <p>1. III제4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할 때 또는 IV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p>	<p>-----</p> <p>-----</p> <p>-----</p> <p>-----</p> <p>-----</p> <p>-----</p> <p>-----</p> <p>-----</p> <p>----. 다만, <u>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당해 공사에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5) ~ 9) (현행과 같음)</p> <p>자.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별표 18 V]</p> <p>1. -----</p> <p>-----</p> <p>-----</p> <p>----- 옮겨</p>
---	--



				3	4	5	6				
				I	II	I	II	III	I	II	I
				10							
				30							

				3	4	5	6				
				I	II	I	II	III	I	II	I
				10	-	-	-	-	-	-	-
				20							
				30							

[별표 19 I]

1.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중요기준).
2.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썰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3.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중요기준).  
가.·나. (생략)
- 4.·5. (생략)
6. 제3호 내지 제5호의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중요기준).  
가.·나. (생략)

[별표 19 I]

1. -----  
-----  
-----  
-----  
----- (세부기준).
2. -----  
-----  
-----  
----- (세부기준).
3. -----  
-----  
-----  
----- (세부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 4.·5. (현행과 같음)
6. -----  
-----  
-----  
----- (세부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3

[별지 제46호서식]

④ 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

[별지 제29호서식]

-----	-----
-----	5

[별지 제46호서식]

④ 완공검사 연월일 및 완공번호

〈의안 소관 부서명〉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팀	
연락처	(02) 2100-5294